

위해 축산물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통중인 축산물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축산물중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로 정함(제3조)
- 나.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위해축산물회수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8조)
- 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회수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10조 내지 제

11조)

- 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위해축산물의 회수를 위하여 영업자가 제출 또는 보고한 회수의 계획이나 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마.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위해축산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동안 영업소 및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1999.11.19 ~ 12.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3건

농림부령 제 1,358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축산물을 회수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영업자”라 함은 축

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회수대상 축산물) 이 규칙에 의한 회수대상 축산물은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중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이하 “위해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 검토) ①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그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당해 요청을 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해축산물회수심의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검토요청을 받은 회수명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위해축산물회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사 또는 수의사

2.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4. 축산물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수명령)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해축산물의 제품명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회수사유

제10조(회수계획의 제출) ①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제품명, 제조·가공량, 판매경로 등
2. 회수사유
3. 회수방법 및 기간
4. 회수장소
5. 회수하는 영업자명, 회수담당자, 연락처(전

화번호)

- 6. 회수되는 위해축산물의 처리방법
- 7. 일간지에의 게재, 판매장예의 게시 등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8.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위해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수결과의 보고) ①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을 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영업자로부터 위해축산물의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축산물의 회수결과 의 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해축산물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 2. 회수된 위해축산물의 처리결과
- 3.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4. 위해발생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4.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자발적 회수) ①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축산물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회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계획을 제출한

영업자는 그 회수계획에 따라 위해축산물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의 제출 및 회수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회수에 대한 지도·감독)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위해축산물을 회수하는 영업자의 축산물회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회수의 진척상황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 또는 보고한 계획이나 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출입·수거 및 검사의 완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수계획에 의하여 당해 위해축산물의 회수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영업소 및 자발적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을 삭제한다.